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0
----------	------

제출연월일: 2024. 5. 2.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본청 국 신설, 과 개편, 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 3)

- 1) 총 계 : 713명(변동없음)
- 2) 일반직 : 710명(변동없음)
 - 가) 4급 : 6명 → 7명(증 1명)
 - 본청 : 4명 → 5명(증 1명)
 - 나) 5급 : 45명(변동없음)
 - 본청 : 26명 → 25명(감 1명)
 - 사업소 : 1명 → 2명(증 1명)
 - 다) 6급 이하 : 658명 → 657명(감 1명)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예산담당 협의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4311호, 2024. 4. 4.)
- 라. 입법예고: 2024. 3. 29. ~ 4. 18.(20일간) / 의견없음
-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713	-				
정무직	소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710	-				
	3급	1	1				
	4급	7	5	1	1		
	5급	45	25	2	4	2	12
	6급 이하	657	-				
별정직	소계	2	-				
	5급 상당 이상	1	-				
	6급 상당 이하	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13	-													
정 무 직	소 계	1	-													
	구 청 장	1	1													
일 반 직	소계	710	-													
	3급	1	1													
	4급	6	4	1	1											
	5급	45	26	2	4	1	12									
	6급 이하	658	-													
별 정 직	소계	2	-													
	5급 상당 이상	1	-													
	6급 상당 이하	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13	-													
정 무 직	소 계	1	-													
	구 청 장	1	1													
일 반 직	소계	710	-													
	3급	1	1													
	4급	7	5	1	1											
	5급	45	25	2	4	2	12									
	6급 이하	657	-													
별 정 직	소계	2	-													
	5급 상당 이상	1	-													
	6급 상당 이하	1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총 정원 변동이 없어,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 기획예산실
-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 이성실
- 연 락 처 : (052)290-3142